

실험·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69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2011.12.30.개정 2016.04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4.21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명칭) 이 위원회는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이라 한다.) 실험·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라 한다.
- 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「실험·실습기자재 관리규정」 제18조에 의거하여 본교에 설치하는 실험·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07.16.>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실험·실습기자재의 확보 예산의 부서별 조정 <개정 2019.07.16.>
- 2. 실험·실습기자재의 품목별 확보 계획의 적정성 심사 <개정 2019.07.16.>
- 3. 주요 실험·실습기자재 구입의 우선 순위 심사 <개정 2019.07.16.>
- 4. 실험·실습기자재 중·장기 확보계획 심의 <개정 2019.07.16.>
- 5. 학과 및 계열 공동 활용 기자재 선정 심의
- 6. 기자재의 효율적 유지 관리 및 활용계획의 심의ㆍ평가
- 7.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의 요구
- 8. 추정단가 500만원이상 실험·실습기자재의 불용처분에 관한 심의
- 9. 기타 실험·실습기자재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<개정 2019.07.16.>
- 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단, 산학협력단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. <개정 2020.09.25.>
 - 2.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, 산하처장,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본교 전임교 원중에서 총장이 추천하는 4인(각 계열별로 각 1명씩)을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0.09.25.>
 -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- 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

실험·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69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-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, 결원이 생긴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한다.
- **제5조(임원 및 직무)**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 -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
 - ③ 간사는 사무처 담당업무 팀장 또는 실험·실습기자재 구매업무 담당자로 한다.
- 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에 1회 개최한다.
 -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 - 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 결한다.
 - ④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**제7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다.
 - ② 단,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록은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8조(비밀유지)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이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9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
실험·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69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3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4.21.)에 의하여『산학처』를『산학취업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, 『산학취업처』를 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